

## ROTORK 물품 구매 표준 약관

### 1. 해석

본건 계약에는 별지 1(해석)에 명시된 정의 및 해석 규칙이 적용된다.

### 2. 적용 조건

공급사가 구매자에게 발행한 문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되거나 또는 거래 관습, 관행이나 당사자들의 거래 과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된 기타 거래조건(승낙서 혹은 기타 양식의 승낙서; 견적서; 인도통지; 표준양식 또는 제안서 등)은 해당 조건 등이 구매주문서에서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아닌 한, 본 GCP 는 이를 배제하고 적용된다.

### 3. 인도

3.1 공급사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Incoterms 2010)으로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장소로 계약물품을 구매주문서의 날짜, 구매주문서 번호, 물품의 유형과 수량(코드 번호 포함), 특별보관 지시사항과 본건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나 정보를 명시한 거래명세서와 함께 인도한다. 공급사가 포장재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거래명세서에 이 점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포장재는 구매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공급사의 비용으로 반환된다.

3.2 인도기일(“**예정된 인도일**”)은 구매주문서에 특정한 날짜를 말한다. 인도는 매수인의 정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3.3 매수인은 단독재량으로 최대 3 개월까지 공급자에게 계약물품의 인도를 연기하거나 또는 본건 계약상 모든 이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4 공급사는 인도시 계약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이전됨을 보장하며, 여하한 담보권 없이 이전되도록 한다.

### 4. 가격 및 대금지급

4.1 계약물품의 가격과 지급 통화는 구매주문서에 정하여 기재한다. 구매주문서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격은 공급사가 매수인에게 발송한 최종 서면 견적서의 가격으로 하며, 공급사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가격견적을 제공한 바 없는 경우, 구매주문서 작성일 현재 유효한 공급사의 가격표에 고시된 가격으로 한다.

4.2 가격은 매수인의 설립관할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VAT**”)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타 여하한 세금, 관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 VAT 를 매수인의 설립관할지에서 부과 가능할 경우, 송장에 별도로 표시하여, 공급사가 제 4.3 조에 의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이하 제 4.4 조를 침해하지 않고 매수인이 지급한다.

4.3 공급사는 계약물품의 예정된 인도일 혹은 인도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 이후 매수인에게 청구서(해당되는 경우 유효한 VAT 계산서)를 제출한다. 공급사는 청구서의 양식에 관하여 매수인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고 청구서에 구매주문서 번호와 가격 명세(매수인이 가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 를 포함시킨다.

4.4 계약물품에 하자가 없고 청구서를 본건 계약에 따라 제출한 경우, 매수인은 공급사의 청구서를 수령한 역월(曆月)의 말일로부터 60 일이 되는 날 공급사에게 지급액을 이체한다. 해당일이 매수인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아닐 경우, 매수인 사업장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지급 전에 계약물품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할 권리를 가진다:

- (a) 제 7.1 조에 따라 하자가 시정될 때까지 계약물품 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 (b) 제 7.2(c)조가 적용되어 해당 계약물품의 가격을 0 또는 이미 지급한 금액 미만의 가격으로 감액한 범위에서 계약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 (c) 제 7.2(e)조에 따라 다른 공급처로부터 계약물품을 조달할 수 있다.

4.5 매수인은 공급사에게 부담하는 여하한 채무(청구서를 수령하였으나 납입기일이 미도래한 액수를 포함한다)를 공급사 또는 그 계열사가 본건 계약이나 기타 합의서상 매수인 또는 그 계열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권리를 가진다.

4.6 공급사가 본건 계약상 매수인으로부터 지급기일에 분쟁 없는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위 제 4.4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급사는 분쟁 없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기본 금리에 연 3%를 더한 금리의 이자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이자는 연체된 첫날부터 공급사가 전액을 수령하는 날까지 단리로 누적된다.

## 5. 품질

5.1 공급사는 구매주문서에 규정되거나 언급된 품질요구사항과 매수인이 수시로 공급사에게 통지하는 기타 합리적인 품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5.2 공급사는 모든 계약물품이 인도시 신품이며 미사용품임을 보증한다.

5.3 공급사는 계약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a) 계약물품에 사용된 자재
- (b) 계약물품의 사양 또는
- (c) 계약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공정.

공급사는 매수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물품을 제조 또는 조립하는 장소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6. 보증

공급사는 매수인에게 각 계약물품의 인도 당시와 인도 이후 각 계약물품이 다음과 같음을 진술 보증한다:

- (a) 구매주문서에 언급되거나 첨부된 여하한 사양을 포함하는, 본건 계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 작동할 것;

- (b) 구매주문서에 기재된(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여하한 목적에 적합할 것;
- (c) 보증기간 동안 기술 및 자재의 (실제 존재하는 혹은 잠재적인)하자가 없을 것;
- (d) 매수인이 계약물품의 설계에 책임이 없을 경우, 보증기간 동안 (실제 존재하는 혹은 잠재적인)설계하자가 없을 것.

## 7. 하자에 대한 구제책

7.1 계약물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제 7.2(a)조를 전제로) 공급사에게 매수인이 요구하는 기한 이내에 공급사의 비용(하자가 없었더라면 매수인에게 소요되지 않았을 운송비와 여하한 기타 비용을 포함)으로 하자를 시정(계약물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시정지시”). 공급사는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거나 또는 시정지시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불가능한 점을 매수인에게 통보한다.

7.2 다음과 같은 경우:

- (a) 매수인이(단독의 절대적인 재량으로) 공급사가 하자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b) 공급사가 시정지시에 따라 하자를 성공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수인에게 시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나 구제책에 대한 침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c) 매수인은 단독의 절대재량으로 본건 계약 금액을 하자의 범위와 영향에 대한 매수인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결정한 금액만큼 감액조정{계약물품(매수인이 하자로 인하여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 계약물품을 포함)의 가격을 0 으로 조정할 수도 있음}하거나,
- (d) 공급사의 비용으로 하자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을 주선하거나,
- (e) 하자의 결과 매수인이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계약물품 및 기타 계약물품(또는 이에 상응한 품목)을 매수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공급사의 비용으로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위 (c)항에 따라 본건 계약 금액을 공급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물품의 가격 미만으로 감액한 범위 내에서, 공급사는 지급한 가격과 조정된 가격의 차액을 매수인이 공급사에게 청구한 후 14 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에게 위 (d)항과 (e)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받은 후 14 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7.3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제 7.2(c)조에 따라 0 으로 감액하였거나 또는 7.2(e)조에 따라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계약물품을 조달한 경우, 공급사는 30 일 이내에 공급사의 비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계약물품을 수거하고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은 수거시점에 공급사에게 이전된다. 공급사가 30 일 이내에 계약물품을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공급사의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파기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매수인이 제 7.1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은 수거시 공급사에게 이전되고 재인도시 매수인에게 다시 이전된다.

## 8. 매수인 자산

- 8.1 공급사는 매수인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사는 매수인 자산을 항상 양호한 조건(정당한 마모 제외)으로 유지하고, 저명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며(보험금 수취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보장범위는 전부교체 비용으로 함) 매수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사는 매수인 자산의 종합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매수인 자산 관련 로그북, 기록(유지보수 혹은 사용기록)과 기타 관련 문서를 최신본으로 유지한다. 공급사는 본건 계약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매수인의 서면승인 없이 매수인 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한다.
- 8.2 공급사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즉시 매수인에게 매수인 자산 목록과 장소정보를 제공한다. 공급사는 매수인 자산과 매수인 소유의 기타 정보나 데이터의 반환 지시를 즉시 준수한다.

## 9. 불가항력

- 9.1 불가항력사유에 처한 당사자가 제 9.2 조와 9.3 조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해당 당사자의 본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명시된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불가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 9.2 불가항력사유에 처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 9.3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어느 당사자가 본건 계약상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에 처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어떤 경우에도 불가항력사유 발생 후 5 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고 불가항력사유에 관한 상세한 사항, 예상되는 효과 및 불가항력에 처한 당사자의 불가항력의 효과에 대한 완화대책을 제공한다.
- 9.4 매수인이 공급사로부터 위 9.3 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할 경우 또는 매수인이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본건 계약상 공급사의 의무의 적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매수인은 공급사에게 서면통지로서 즉시 계약물품 전부나 일부에 관한 본건 계약상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경우, 공급사는 취소 전에 취소된 계약물품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급하였던 금액을 환불하고 어떤 당사자도 취소에 관하여 상호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는 본 제 9.4 조에 따른 취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0. 정보의 제공 및 검사권

- 10.1 매수인은 그 절대적인 재량으로 그리고 본건 계약의 해지, 인도 또는 계약물품 전체의 취소 전 언제든지, 다음을 조사하거나 또는 다음을 조사할 매수인의 고객, 규제기관이나 독립된 제3자를 지명할 수 있다:
- (a) 본건 계약 관련 작업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공급사의 작업장 및 계약물품의 공급에 관해 사용되는 도구나 장비;

- (b) 공급사가 계약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정, 방침, 시스템 혹은 계획도;
- (c) 공급사가 계약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자재;
- (d) (제조 혹은 조립 공정의 어느 단계인지를 불문하고) 계약물품 자체;
- (e) 공급사의 계약 준수와 유관한 경우, 연간보고서, 중간계산서 또는 월간경영보고서 등 공급사의 재무정보.

공급사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고객, 규제당국 또는 독립된 제 3자가 매수인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적시에 점검을 수행 및 완료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최대한 협력한다.

- 10.2 구매주문서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인도 전에 특정 검사를 수행할 것을 명시할 경우, 공급사는 매수인이 검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든 14 일 이상 이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 10.3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제 10.1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서면통지를 하지만, 매수인은 단독 재량으로 공급사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 10.4 공급사의 의무이행 능력과 관련된 합리적인 우려의 결과로 제 10.1 조에 의하여 매수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사는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 10.5 매수인이 공급사가 본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공급사에게, 공급사가 본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매수인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서면 증빙을 매수인이 요구한 후 14 일 이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0.6 공급사가 발효일 현재 공급사를 지배하지 않던 업체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을 경우 혹은 받게될 것이라고 믿게된 경우, 법률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공급사는 즉시 해당 업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통보한다.
- 10.7 매수인, 매수인의 고객, 규제기관이나 독립된 제 3자가 본 조항에 따라 수행한 검사는 계약물품의 인수 승낙 혹은 공급사의 의무의 여하한 면제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 10.8 공급사는 요청시 매수인에게 즉각 계약물품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다.

## 11. 취소

- 11.1 계약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언제든지 공급사에게 서면통지하여 계약물품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본건 계약에 따라 발행한 구매주문서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 공급사는 취소된 계약물품에 관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하도급인과 공급업체들이 취소된 계약물품에 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 11.2 제 11.3 조를 전제로, 매수인이 위 11.1 조에 따른 취소를 행사할 경우, 공급사는 인도 전에 취소된 계약물품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환불하고 매수인은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청구액 전액을 공급사에게 지급한다.
  - (a) 공급사가 취소된 계약물품에 관하여 취소일까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소요하였다고 입증하는 직접비 및

- (b) 공급사가 위 (a)항에 의하여 또는 이미 지급된 기타 지급액을 통하여 보상받지 못하였고 계약물품의 취소의 직접적인 결과로 공급사에게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유발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공급사에게 유발된 비용.

단, 본 제 11.2 조에 의하여 매수인이 공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된 계약물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11.3 공급사는 제 11.2 조에 따른 청구액 전부를 취소일의 60 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사가 11.2 조에 따른 청구전부를 60 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급사의 청구제기권은 무효화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취소와 관련하여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11.4 매수인이 제 11.1 조에 따른 계약물품 취소권을 행사하고 매수인이 제 11.2 조에 따라 공급사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단독재량으로 공급사에게 모든 재공품(work-in-progress)과 취소된 계약물품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구매한 모든 자재를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1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 12.1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사에게 서면통지하는 즉시 본건 계약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a) 공급사가 지급불능사유에 처할 경우;
- (b) 공급사가 경쟁업체의 계열사가 될 경우;
- (c) 공급사가 제 3.2 조, 3.4 조, 10.1 조, 10.5 조, 13 조, 14 조, 15 조 또는 17 조를 위반할 경우;
- (d)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계열사와 공급사 또는 공급사의 계열사 사이의 기타 계약에 관하여,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계열사가 공급사 또는 공급사의 계열사의 해당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당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질 경우;
- (e) 공급사가 본건 계약의 기타 조항을 위반하고 (시정 가능한 위반일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시정위반을 요구하는 서면요청서를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12.2 제 12.1 조에 따른 해지시, 공급사는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매수인에게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물품 완료를 위해 사용하는 제 3 자에게)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완전하게 제작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계약물품을 완전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계,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 14 조를 전제로, 매수인은 제 12.2 조에 따라 제공된 설계, 문서와 정보를 계약물품의 제작 완료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계약물품을 제작 완료하게 할 목적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12.3 공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본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급사가 보통법에 따라 달리 가질 수 있는 본건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이로써 배제한다:
- (a) 매수인이 지급불능사유에 처할 경우; 또는

- (b) 매수인이 본건 계약상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공급사로부터 지급이 연체되었다는 서면통지를 수령한 후 90일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단, 지급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없을 것.

### 13. 비밀유지

13. 제 13.2 조를 전제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열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입수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a)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정보를 보호하고(합리적인 정도의 주의 수준이 되어야 함);
- (b) 본건 계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2 제 13.1 조의 규정은:

- (a) 다음과 같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이미 공지사항이 된 정보;
  - (ii) 미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 (iii) 합법적인 법률적 기관이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정보 또는
  - (iv) 입수 당시 입수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 (b) 어느 당사자가 본건 계약과 당사자들 간 사업에 관한 재무정보를 지명된 감사인, 법률자문인, 보험사 및 회계사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c) 어느 당사자가 계약물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하수급인과 공급처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d) 매수인이 계열사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3.3 각 당사자는 제 13 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는 제 3 자에 의한 본 제 13 조의 규정의 준수를 책임진다.

### 14. 지식재산권

14.1 제 12.2 조 및 14.2 조를 전제로, 어떤 당사자도 계약물품과 관련하여 상대방당사자의 소유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용권이 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개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권리나 이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14.2 공급사, 그 공급업체, 하수급인 혹은 대리인이 매수인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 개발 혹은 수정한 결과 창조한 모든 지식재산권(신기술, 제품, 공정, 사업방법이나 제조방법에 대한 지식재산권 포함)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의 절대적인 재산이 된다. 공급사는 이와 같이 창작된 지식재산권을 완전한 소유권을 보증하여(full title guarantee) 매수인에게 이전하거나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a) 해당 지식재산권이 창작 즉시 매수인에게 전부 귀속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고 (관련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
- (b) 직원 또는 관련 사업자(공급사의 공급업체의 직원과 관련 사업자 포함)가 지식재산권 관련 작업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도록 보장하고 요청시 매수인에게 포기에 관한 서면증빙을 제공한다.

14.3 공급사는 본건 계약에 의하여 혹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작업의 결과 창작된 지식재산권 또는 매수인의 소유이거나 매수인이 공급사에게 제공한 지식재산권을 본건 계약상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이전하거나 그 사용권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14.4 공급사는 매수인 또는 어느 최종사용자의 계약물품 점유, 사용, 이용 혹은 수리 행위가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실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조항 14.4 조는 제 3 자 청구가 공급사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직접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결과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15. 준법

15.1 공급사는 항상 다음과 같이 한다:

- (a) 모든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여 유지하고 준수한다.
- (b) 계약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여된 인허가에 관하여 발생되거나 또는 법률상 존재하는 제한이나 부관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 (c) 매수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이에 필요하거나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게 되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 16. 보험

16.1 공급사는 각 청구에 대하여 1,500,000,000 원(혹은 지역통화 상당액) 또는 주문가액의 20 배 중 더 큰 금액을 하한(下限) 배상금으로 정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한다. 이 보험은 “보험청구 발생”기준으로 적용되며 본인의 보상청구권 조항(indemnity to principals clause)를 포함하고,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장 조항을 포함하여 본건 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모든 상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공급사가 유지한다.

16.2 공급사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이 수락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16.3 공급사가 본 조항 16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공급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17. 윤리



- 17.1 공급사는 Rotork 의 공급사 행위규범을 항상 준수한다. 동 규범의 사본은 <http://www.rotork.com/en/about-us/index/codeofconduct> 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요청시 제공 가능하다. 공급사는 매수인의 요청시 공급사가 해당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매수인이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 17.2 공급사는 매수인에게 발효일과 그 후 계속, 공급사 또는 공급사를 대행하는 자가 본건 계약의 수주를 위해 혹은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또는 본건 계약의 수주나 협상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대표자의 행위나 결정을 보상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적 혜택이나 기타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합의하거나 약속하거나 혹은 향후 제공하거나 제공에 합의하거나 약속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 18. 기타**
- 18.1 제 2 조를 전제로, 규정의 충돌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적용된다:
- (a) 구매주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언급된 것이 아님)된 규정;
  - (b) 본 GCP
  - (c) 구매주문서 또는 본 GCP 에 언급된 기타 문서.
- 18.2 각 당사자의 권리는 필요한 때 수시로 행사할 수 있고, 누적적이며, 서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포기 가능하다. 어느 권리의 불행사 혹은 행사 지연은 해당 권리의 포기가 아니다.
- 18.3 본건 계약에 의하여 혹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에게 송부한 통지는 해당 당사자의 통상적 또는 그 상위의 연락처에 이메일로 발송한다. 해당 당사자의 통상적 또는 그 상위의 연락처의 이메일 주소가 미상이거나 또는 이메일이 전달불가로 반송될 경우(또는 통지를 교부하는 당사자가 12 시간 이내에 이메일이 수신처에 교부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등록된 주소 혹은 본점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 담당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우송한다. 우송한 통지는 국제 우편의 경우 96 시간 이내 국내 우편의 경우 48 시간 이내 수령한 것으로 본다.
- 18.4 본건 계약상 어떤 부분도 당사자들 사이에 동업관계나 합작관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어느 당사자를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구성하지 않고 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신인(fiduciary)관계를 만들지 아니한다. 어떤 당사자도 자신을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파트너라고 소개하지 아니하며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혹은 상대방 당사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도록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하지 아니한다.
- 18.5 본건 계약은 계약물품에 관한 당사자들의 완전합의를 구성한다. 어떤 당사자도 본건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거나 규정된 규정 이외에는 계약물품의 제공과 관련된 발효일 이전의 구두 혹은 서면 진술을 신뢰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사기적으로 작성된 진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8.6 공급사는 본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달리 이전하지 아니한다.

18.7 본건 계약의 규정이 어느 관할지에서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불법, 무효 혹은 집행 불가능할 경우, 나머지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또는 다른 관할지에서 해당 규정 또는 다른 규정의 합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9. 지속되는 의무

본건 계약 제 1 조, 2 조, 4.5 조, 4.6 조, 6 조, 7 조, 8 조, 12.2 조, 13 조, 14 조, 15 조, 17 조, 18 조, 19 조 및 20 조는 본건 계약의 해지 혹은 만료 이후에도 존속하고 위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한다.

## 20. 법률 및 관할지

20.1 본건 계약 및 본건 계약으로 인하거나 관련하여 비계약적 의무는 한국법의 지배를 받고 한국법에 따라 해석된다.

20.2 본건 계약으로 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논쟁 또는 청구(“분쟁”)은 계약, 불법행위, 형평법, 법률상 의무 위반 등에 기하여 발생함을 불문하고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국제중재재판소 규칙에 따라 최종으로 해결한다. 중재 장소는 한국 서울로 하고 중재언어는 영어로 한다.

20.3 당사자들이 선정하여 임명한 1 인의 중재인이 중재하되, 단,

(a) 분쟁금액이 1,500,000,000 원 또는 상당액(비용과 수수료 제외하고)을 초과하거나 또는

(b) 당사자들이 30 일 이내에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3 인의 중재인이 임명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요청서를 발송 또는 수령한 후(또는 위 (b)항에 따른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30 일 이내에 중재인 1 인씩을 선정하고, 선정된 2 인의 중재인이 세번째 중재인을 공동 선정한다. 2 인의 중재인이 30 일 이내에 세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ICC 가 임명한다.

20.4 당사자들은 임명된 중재인들이, 본안에 대한 결정을 감안하고 당사자들의 행위를 포함한 중재절차 수행을 고려하여, 행정 비용 및 수수료와 법률, 증인 및 전문가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중재 비용 및 수수료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합의한다.

20.5 본 제 20 조는 언제든지 해당 법원에 임시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는 어느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 보호는 일방 당사자의 중재 동의에 대한 포기 또는 제한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0.6 당사자들은 제품의 국제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본건 계약 또는 그에 따른 어느 거래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 별지 1 해석

## 1. 해석

## 1.1 정의

“계열사”란 어느 인(人)에 관하여, 해당 인을 지배하거나, 해당 인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해당 인과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타인을 말한다.

“기준금리”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 영업종료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말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동년 6월 30일 영업종료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말한다.

“매수인”이란 공급사에게 구매주문서를 발행하는 법적 주체를 말한다.

“매수인 자산”이란 매수인이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에게 대여하거나, 위탁하거나 공급한 도구나 장비를 포함하는 매수인의 자산을 말한다.

“경쟁업체”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계열사가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과 경쟁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계열사를 말한다.

“본건 계약”이란 공급사가 수락한 구매주문서, GCP 및 구매주문서와 GCP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물품의 공급에 적용된다고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말한다.

“지배”란 직·간접적으로 (a) 피지배인의 이사(또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의 선출을 위한 보통의결권을 가지는 증권의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b) 계약 등에 의하여 피지배인의 경영과 방침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유도할 권한을 말한다.

“하자”란 제 6조의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물품”이란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공급사가 매수인에게 공급하기로 합의한 제품이나 물품을 말한다.

“인도”란 제 3.1 조에 따른 계약물품의 인도를 의미하고 “인도하다”란 그에 따라 해석된다.

“발효일”이란 본건 계약을 당사자들이 체결한 날을 말한다.

“불가항력사유”란 공급사가 통제할 수 없고 공급사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예방이 불가능한 사유를 말한다.

“GCP”란 본 문서와 그 내용을 말한다.

“정보”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 형식이나 기타 형식으로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달리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여하한 형식이나 매체로 저장된 어느 당사자의(또는 어느 당사자가 보유하는) 상업적, 재무적, 기술적 또는 운영 관련 정보, 노하우, 영업기밀 또는 기타 정보(본건 계약 및 본건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기타 합의 또는 문서상에 포함되는 규정 및 목적사항 포함)를 의미한다.

“지급불능사유”란 (a) 어떤 자가 지급불능으로 간주되거나 자신이 지급불능임을 서면 진술하거나, (b) 어떤 자 또는 그 자산의 해산, 청산, 또는 회생 목적상 어떤 자의 자산이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지배나 감독을 받게 되는 지급불능절차 또는 집합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임시 절차 포함)의 대상이 되거나, (c) 채권자 일반 또는 어느 종류의 채권자와 회의 또는 약정을 제안하거나 체결하거나, (d) 어떤 자가 채권자 일반 또는 어느 종류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지급 중지를 서면으로 선언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업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중단 또는 중지하거나, (e) 그 자의 자산 및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된 부담을 집행하기 위한 기타 조치가 취해지거나 또는 (f) 위 (a)항 내지 (e)항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a)항 내지 (e)항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등록 디자인, 상표권, 서비스마크(등록 여부 불문), 도메인명, 저작권, 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권, 저작인격권, 영업비밀, 노하우, 메타태그, 소특허, 실용신안권 및 모든 유사한 지적재산권(발명, 디자인, 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상호, IP 주소, 영업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외양(get-up)’/스타일/표현과 관련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권리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권리의 계속성, 재발급 또는 분할을 위한 신청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법률”이란 수시로 발효되어 적용되는 모든 적용 법규, 규정, 내규, 조례, 하위 규정과 기타 법률(출처 불문)과 이에 관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해석을 말한다.

“구매주문서”란 매수인이 발행하고 GCP 를 인용하여 GCP 를 그 일부로 하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일정합의(scheduling agreement) 또는 기타 양식의 구매문서를 말한다.

“당사자들”이란 매수인과 공급사를 말하고 “당사자”란 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시정지시”란 제 7.1 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예정된 인도일”이란 제 3.2 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담보권”이란 저당권, 부담, 질권, 부담, 유치권, 상계권, 양도, 담보약정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기타 약정이나 합의를 말한다.

“공급사”란 구매주문을 수락하는 업체를 말한다.

“보증기간”이란 구매주문서에 계약물품의 “보증기간”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한 기간을 말하고 또는 구매주문서에 정함이 없을 경우 계약물품의 인도 후 24 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 1.2 해석

(a)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GCP 에서

- (i) “포함하다”, “포함하는”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들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 해석한다.
- (ii) “일”이란 역일(曆日)을 말한다.